

# 유기견 거래 계약서

"갑"은 "을"이 유기견을 입양에 있어 거래 당사자간의 업무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사항에 대하여 합의 계약을 체결한다.

## 제1조(계약의 성립)

- (1) "갑"과 "을"의 거래성립은 입양신청서를 작성한 후 "을"의 책임자의 날인된 신청서가 "을"에게 도착함으로써 성립된다.
- (2) 입양의 구체적 사항은 별도 합의서에 의하여 작성한다.
- (3) "갑"은 "을의 신청서가 도착하면 일정 등을 검토하여 1주일이내 "을 "에게 1차 통화 상담을 하고 "갑"이 수락하면 신청에 의거 진행한다.

#### 제2조(과정)

- (1) "갑"은 "을"과의 입양 진행 시, 추가적인 1차례의 전화와 2차례 방문과 교육 1달의 입양 테스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락한다.
- (3) "갑"은 유기견을 인도 하는 즉시 물품과 입양 신청서를 대조한 후 유기견 거래 계약서를 발급 교부한다.
- (4) "갑"은 부상, 사망등의 특이 사항이 발생시 "을"에게 통보하며, "을"은 개인 사정에 의해 거래 취소시, 1주일 이전에 미리 "갑"에게 연락한다. "갑"과 "을"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키로 한다.

### 제3조(물품대금의 결재)

- (1) "을"이 납품한 입양비용은 별도 합의서에 의하여 갑"과 "을 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
- (2) 입양일,입양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합의서에 의하여 정하며 "을"은 입양 완료일에 입양비용을 지급 하여야 하며 입양비용 지연시에는 계약서 상의 권리를 "갑"은 을에게 행사를 할수 있다.

#### 제4조(계약의 해지)

- (1) "갑"과 "을"은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야기되는 손해가 발생시에는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책임을 진다
  - 1.상대방이 본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.
  - 2.상대방이 감독 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/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.
  - 3.경영상의 중대한사유가 발생하여 본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.

#### 제5조(분쟁의 해결)

- (1)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"갑"과 "을"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해결하며 그 밖의 사유는 상 관례에 따른다.
- (2)본 계약을 이행과정에 있어 발생하는 분쟁이 법원의 해결이 필요로 할 시에는 "갑"의 해당 관할지 법원으로 한다.

#### 제6조(유기견의 소유권)

- (1) "을"의 입양비용 지불에 의해 유기견 소유권은 "을"에게 있다, "갑"이 유기견이 위험하다 판단되는 경우. "갑"에게서 유기견을 환수 받을수 있고 "을"은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.
- (2) "을"이 "갑에게 유기견에 대한 소유권은 입양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입양비용의 지불이 완료되지 않 은 유기견의 소유권은 "갑 "에게 있으며 필요시 회수 조치 할수 있다.
- (3) "을"은 "갑"에게서 입양받은 유기견을 자기 마음대로 다른 이에게 분양 할 수 없다.

#### 제7조(계약기간)

(1)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별도 합의서 작성에 의한 기준일로 하며, 계약 종료일 1개월전에 계약해지에 대한 특별한 요구나 통지가 없는한 자동으로 연장한다.

### 제8조(검수)

(1) "갑"로부터 유기견의 검사는 "갑"과 "을"이 상호 체결한 "입양 동의서"를 기준으로 하며 특수한 상황시 이를 즉시 "을"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"갑"은 연락하여야 한다.

#### 제9조(기타)

(1) 상기 입양 거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"갑"의 규정이나 절차 서에 준한다.₩

작성일:20 년월일

"갑 " 주 소:

상 호: ANICARE

대표자:

"을 " 주 소 : 입양자 :

# 거래관계 합의서

거래 당사자간의 체결된 기본 거래 계약서에 의거 관련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의 대표자 or 위임자가 서명날인하여 각 1통씩을 보관하고 "갑"과 "을"은 본 합의서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.

#### 합의내용

- 1.거래방법:
  - (1) "을"의 입양신청서에 의한 거래(서류)
  - (2) 과정 진행 중 결재 방식
- 2.입양비용결재
  - (1)양자가 합의한 입양비용 결재방식 및 결재 일자를 준수하며, 미준수시 "갑"을에게 통보 후 계약서 상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
  - (2) 카드/현금 결제(소득공제용 영수증 필수 제공)
- 3.입양절차
- 1. 신청서 작성 완료 후. ANICARE의 관련 담당자 혹은 관리자가 신청자분에게 전화 상담을 진행 합니다.
- 2. 신청서를 잘 작성하신 후에 보호소로 오셔서 한두 번 정도 동물들을 만나보기를 요청 드립니다. 이후 입양 전 한달 간의 테스트 기간을 시작합니다. 한달의 입양 전 테스트기간동안에는 반려동물은 ANICARE의 소속이며 담당직원이 정기적으로 연락을 할 것 입니다.
- 3. 테스트 기간이 끝낸 후에 그 동물을 입양하기를 원하시면 계약서에 서명하시고 입양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. 모든 단계가 완료되면 반려동물의 소속이 입양자에게로 이전됩니다.
- 4. 입양자는 입양 계약서의 복사본을 받을 것입니다. 혹 입양 동물이 병력이 있다면 그에 관련된 병력복사본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입양 후 7일 안에 동물병원에 입양한 동물을 데려가셔서 재 검사 받으시길 권합니다.
- 4.입양
- (1) "을"의 거래서(유기견 거래 계약서)는 "갑"이 보관하고 , "갑"의 인수증은 (유기견 거래 계약서)는 "을"에게 반송한다.
- 5.납기
- (1) "갑"과 "을" 상황에 맞게 서로 합의하에 조정 한다.
- 6.입양비용적용
  - (1) 입양 비용에 준한다.
  - (2) 입양비용 인상/인하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한다

작성일자: 20 년 월 일

"갑 " 주 소: "을 " 주 소: 나는 사 호: ANICARE 입양자:

대표자:

# 거래 계약서(갑본)

계약번호:

계약일자:

"갑 " 주 소:

상 호: ANICARE

대표자:

"을 " 주 소:

입양자:

# 거래 계약서(을본)

계약번호:

계약일자:

"갑 " 주 소:

상 호: ANICARE

대표자:

"을 " 주 소:

입양자: